

- 클린도시철도 구현을 위한 -
청탁 대상업무 및 청탁유형 발굴계획(안)

2015. 7.



- 감사실 -

청탁 대상업무 및 청탁유형 발굴 계획(안)

공사 내 발생 가능한 청탁대상업무 및 청탁유형을 발굴하여 전직원 공유를 통한 청탁없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.

□ 목 적

- 공사내 발생 가능한 청탁 대상업무 및 청탁유형을 발굴하여 전 직원 공유를 통한 청탁없는 클린도시철도 구현

□ 추진 근거

-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 (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-859, 2015.03.31.)
 - 2015년도 반부패 수범사례
-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비 추진계획(감사실-769, 2015.05.11.)

□ 청탁업무 발굴 계획

- 발굴분야 : 공사업무 중 청탁대상업무
- 제출기간 : 2015. 7. 31(금)
- 제출방법
 - 팀 제출 :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팀 실정에 맞는 청탁업무 및 청탁유형을 작성하여 감사실로 공문 제출
 - 개인 제출 :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소속팀 또는 타팀의 청탁업무 및 청탁유형을 작성하여 담당자에 메일 송부
- 인센티브 : 청렴마일리지 2점

《작성예시》

| 구 명 | 업무명 | 청탁유형 |
|-------|-----|--|
| 자산회계팀 | 계약 | - 특정업체, 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 구구구구 요구 - 구구구구 구구구 제3구구 구구 구구구구 구구 요청 |
| 감사실 | 감사 | - 구구 구구구 구구구 구구구 구구 구구 구구 구구 요청 - 구구 구 구구구구구구 구구구 구구구구구 구구 요구 |

○ 청탁의 정의

☞ 청탁의 정의

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

○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 기준

- 청탁으로 인해 임직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(재산상·비재산상) 이익
 -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
 -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·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
 - 과태료·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·면제 요청
 - 단속·점검 등 관리·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
 - 각종 시정명령을 약화시키도록 요청
 - 상설,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·특혜 요청
 - 상급 감독기관으로부터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

○ 임직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

-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한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
-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공직자가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

○ 청탁으로 볼 수 없는 행위

☞ 청탁으로 볼수 없는 행위

- 일반국민이나 상급자(동료)가 관련법령에 의거 임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·요청, 진정, 지시, 권한행사,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 행위로 보지 않음
 -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관련 일반적 요청
 - 민원인의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의 대리권 행사
 -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·문의·진정
 - 관계기관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요청, 사실조회 등 협력 행위
 - 공공기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
 -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
 - 인사 관장 부서가 직무상 인사 관련 추천을 받은 경우 등

□ 향후 계획

- 공사내 청탁대상업무 및 청탁유형 확정
- 공사내 청탁대상업무 및 청탁유형 전직원 공유·전파
- 유사 청탁유형 발생시 즉시 청탁등록시스템 신고 유도